

투자권유준칙

2009.01.30	제	정
2010.12.31	개	정
2012.04.02	개	정
2014.05.16	전면개정	
2016.11.01	개	정
2017.03.07	개	정
2018.01.26	개	정

제 1 편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0 조 제 1 항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파생상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1. 파생상품

2. 법 시행령 제 52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

제 3 조 (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 등은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임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편 투자자의 구분 등**제 4 조 (방문 목적 확인)**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 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일반·전문투자자의 구분)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 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법 제 9 조제 5 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로 본다.

제 3 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6 조 (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 120 조제 1 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 시행령 제 132 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7 조 (파생상품등에 대한 특칙 (적정성원칙))

-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이하 “투자자정보” 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 1 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투자자 에게 알리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전자우편과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 “서명 등” 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제 10 조부터 제 12 조까지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제 4 편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 4-1 편 투자자정보

제 8 조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별지 제 1 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제 1 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별지 제 2 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제 3 편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 ⑤ 임직원 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 1 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 9 조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 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제 1 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 4-2 편 투자권유

제 10 조 (투자권유 절차)

- ① 임직원 등은 회사가 정한 [별지 제 2 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 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 호]의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 ④ 만일,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⑤ 임직원 등은 만일, 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자성향에 비해 위험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게 [별지 제 1 호]의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에 따라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⑥ 임직원 등은 제 1 호의 투자자에게 제 2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5 호]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2. 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제 11 조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 ① 회사는 70 세 이상을 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그 중 80 세 이상을 보다 강화된 판매절차를 적용하는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하며 고령투자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담과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업점에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 ② 임직원 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 10 조제 1 항에 따른 [별지 제 2 호]의 적합성판단기준과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 등은 고령투자자의 사리분별능력(간단한 개념을 이해하거나 처리하는데 어려워하는 경우, 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하는데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 투자결정에 따른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 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판매를 중단한다.

2. 임직원 등은 고령투자자의 경우 “투자권유 유의상품” 을 권유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관리직 직원이 권유의 적정성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 가. 관리직 직원은 고객과의 직접적 면담 또는 전화를 통해 고객의 이해여부 및 투자 권유의 적정성 등을 사전 확인한다.
 - 나. 관리직 직원이 사전 확인한 결과, 고객의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상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을 중단하여야 하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과 회사가 투자권유 할 수 없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다. 관리직 직원은 권유의 적정성 사전확인 시 최근 투자자 정보 변경여부, 투자 자금의 성격, 투자권유 과정의 적법성, 주요 설명내용의 이해여부, 사리분별 능력의 현저한 변화 유무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판단되지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직 직원이 추가로 설명한 후 고객의 투자의사를 재확인하여 판매해야 한다.
3. 임직원 등은 고령투자자의 경우 신변 또는 건강상태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령투자자로부터 [별지 제 1 호]의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따라 사전에 조력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4. 임직원 등은 초고령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유의상품” 을 판매하는 경우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별지 제 1 호]의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양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족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여 초고령투자자를 조력할 수 있고 초고령투자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5. 임직원 등은 초고령투자자가 가족 등의 조력을 받거나 관리직 직원의 동석을 통한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투자숙려기간(1 일)을 부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④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 을 제 2 조 파생상품 등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지정한다.
 - ⑤ 회사는 “투자권유 유의상품” 에 해당되는 신상품 개발 시 고령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고령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삭제>

제 13 조 (투자권유 시 유의사항)

-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가.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나.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다.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라.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각 행위는 제외한다.
 - (1)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2)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금융투자상품: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5. 투자자(법 제 72 조제 1 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는 제외한다)로부터 금전의 대여나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요청 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관계 법령 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의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 ③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 ④ 임직원 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 4-20 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 (이하 “계열회사등” 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 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 하여야 한다.

제 4-3 편 설명의무

제 14 조 (설명 의무)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 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 ② 임직원 등은 제 1 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③ 임직원 등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 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은 [별지 제 1 호]의 “상품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 확인란” 의 내용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1. 투자자가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경우 법 제 123 조에 따른 투자설명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 설명서를 말한다)를 판매 전에 교부하는 경우

- ⑤ 임직원 등은 제 1 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 15 조 (외화증권 등에 의한 설명의무)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외화증권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4 조 1 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상황 등의 특징
 -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가의 거래제도·세제 등 제도의 차이
 -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
-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 하는 경우에는 제 14 조 제 1 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 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20%, 40%, 60%)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사실

제 15 조의 2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 14 조제 1 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 2. 상각·전환의 사유 및 효과
 - 3.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4.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5.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6. 사채의 순위
- ② 임직원 등은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해 설명할 때에는 [별지 제 6 호] 에 기재된 내용을 참조하여 상품별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 5 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 16 조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 ① 회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별지 제 3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해 회사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 를 상담창구에 비치하고, 투자권유 시 이를 활용하여 다른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해 상대적인 위험수준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⑤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따라 3 가지 색상(적색, 황색, 녹색)으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에 대한 투자자의 직관적인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 ⑥ 임직원 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 6 편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 17 조 (계약서류의 교부 및 계약의 해제)

- ① 임직원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매거래계좌를 설정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3. 투자자가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받을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로서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 ② 임직원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제 1 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투자자문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 18 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임직원 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 103 조 제 3 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①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②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③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④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 19 조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 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자기매매를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 시장에서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부당한 권유 금지

1.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법 제 55 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및 법 제 71 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직원 등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예상수익률의 보장, 예상수익률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8.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9.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 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나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0 조 <삭제>

제 21 조 <삭제>

제 22 조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2월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2년 04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7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준칙은 2018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준칙의 시행일 이전에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준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 1 호>

투자자정보 확인서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드리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고객의 상황에 부합하거나 가장 가까운 항목을 정확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확인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6 조의 2 제①항에 따라 고객이 파생상품등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음 해당 항목에 V 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일반법인	<input type="checkbox"/> 전문투자자
-----------------------------	-------------------------------	--------------------------------

■ 투자권유 희망여부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희망 (정보제공 필수)	
<input type="checkbox"/> 투자권유 희망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투자정보제공 <input type="checkbox"/>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일임·(비지정형)신탁계약 및 파생상품 등 거래희망 시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의사가 있기전까지 회사가 투자권유를 할 수 없습니다. • 투자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 손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 등록구분

<input type="checkbox"/> 기존정보와 동일	<input type="checkbox"/> 신규(또는 정보변경)
-----------------------------------	--------------------------------------

■ 투자성향 분석정보

PART 1 [기초정보]			
개인		법인	
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 19 세 이하 ② 만 20~40 세 ③ 만 41~50 세 ④ 만 51 세~60 세 ⑤ 만 61 세 이상	1	법인고객님의 자본금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총자본금기준) ① 200 억 이상 ② 100~200 억 미만 ③ 50 ~100 억 미만 ④ 10~50 억 미만 ⑤ 10 억 미만
2	고객님께서 투자하실 자금의 투자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6 개월 이내 ② 6 개월~1 년 이내 ③ 1 년~2 년 이내 ④ 2~3 년 이내 ⑤ 3 년 이상		

3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투자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응답가능) ① 은행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②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③ 신용도 중간 등급의 회사채, 원금의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④ 신용도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률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⑤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4	고객님의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낮은 수준]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② [낮은 수준]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③ [높은 수준]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④ [매우 높은 수준]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5	고객님의 투자하실 자금은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등 제외) 중 어느 정도의 비중입니까? ① 10% 이내 ② 10%~20% 이내 ③ 20%~30% 이내 ④ 30%~40% 이내 ⑤ 40% 이상	
6	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①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②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③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법인고객님께서서는 최근 5년간 몇 번 당기 순 손실을 기록하셨습니다? (손익계산서 기준) ① 1회 이하 ② 2회 ~ 3회 ③ 3회 초과
7	다음 중 고객님의 감수할 수 있는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원금보전 필요 ② 원금의 10% 미만 ③ 원금의 20% 미만 ④ 기대수익이 높으면 위험도는 상관없음	
PART 2 [위험선호도]		

■ 고령투자자 보호기준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해주시오)

고령투자자(만70세이상) 및 초고령투자자(만80세이상) 조력자 정보			
고령자/초고령자	가족성명: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접수방법: <input type="checkbox"/> 창구 <input type="checkbox"/> 유선 <input type="checkbox"/> 없음	유선접수자:	유선시간:
조력자정보	※ 상기 제공된 대리인 개인식별 정보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함 [거래종료 후 5년 (단,금융사고조사/분쟁해결/민원처리/자본시장법 등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 별도 보관)]		
초고령투자자	▶ 위 상품에 대하여 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가족 _____ (인/서명)		
조력자 확인	▶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 및 이해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관리직원 _____ (인/서명)		
	<input type="checkbox"/> 없음		

■ 상품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 확인란

설명내용 고객 확인사항

1.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 (교부를 거부)

2. 상품의 내용, **핵심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등), 원금손실가능성(예금자보호법적용대상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해지,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 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밑줄친 부분 고객 자필 기재

*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현금예수금(위탁자예수금·수익자예수금), 신용공여담보금 등 일부 담보금 비과세종합저축 등 저축자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 대상임.

성 명 : (인/서명)
 대리인 거래 시 대리인 성명 : (인/서명)

<별지 제 2 호>

적합성판단기준

문항별 배점

- 1 번: ① 또는 ②로 응답한 경우 4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2 점, ⑤로 응답한 경우 1 점
- 2 번: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4 점, ⑤로 응답한 경우 5 점
- 3 번: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4 점, ⑤로 응답한 경우 5 점 (중복응답한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
- 4 번: ①로 응답한 경우 1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4 점
- 5 번: ①로 응답한 경우 5 점, ②로 응답한 경우 4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3 점, ④로 응답한 경우 2 점, ⑤로 응답한 경우 1 점
- 6 번: ①로 응답한 경우 3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1 점
- 7 번: ①로 응답한 경우 -2 점, ②로 응답한 경우 2 점, ③으로 응답한 경우 4 점, ④로 응답한 경우 6 점

점수 계산 방법

- 1 번부터 7 번까지의 응답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2 점)하고, 이를 100 점으로 환산

(예) 1 번부터 7 번까지의 합이 26 점인 경우, $26 \text{ 점} / 32 \text{ 점} \times 100 = 81.3 \text{ 점}$

투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의 투자성향을 5 단계로 분류

- 20 점이하: 안정형
- 20 점초과 ~ 40 점이하: 안정추구형
- 40 점초과 ~ 60 점이하: 위험중립형
- 60 점초과 ~ 80 점이하: 적극투자형
- 80 점초과: 공격투자형

<별지 제 3 호>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구 분		초고위험 (1 등급) (Speculative Risk)		고위험 (2 등급) (High Risk)	중위험 (3 등급) (Middle Risk)	저위험 (4 등급) (Low Risk)	초저위험 (5 등급) (Ultra Low Risk)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집합투자증권		매우높은위험 (1 등급)	높은위험 (2 등급)	다소높은위험 (3 등급)	보통위험 (4 등급)	낮은위험 (5 등급)	매우낮은위험 (6 등급)
채 권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회사채 (BBB+~BBB-)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A-이상)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파생 결합 증권	ELS DLS	원금비보장형			원금부분보장형		
	ELW	ELW					
주식		신용거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주 식			
장내파생		선물옵션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에 따라 6 단계로 분류

* 회사 내부정책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손익구조, 시장상황 등 위험요인을 참고하여 위험등급과 각 등급에 포함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상세내역을 정할 수 있음. (아래 예시 참조)

* ELF의 경우 ELS와 동일하게 투자위험도 분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평가 고려요소 (예시) 위험도 측정 및 조정 시 참고할만한 **정량적 요소**

	구 분	설 명
정량적 요소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성 (환율변동위험 포함)	과거 3년간의 역사적 자료를 이용하며 표준편차, VaR 등을 이용할 수 있음.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위험도를 참고 할 수 있음
	원금손실가능 정도	만기일까지의 투자원금 보장 정도로 100%보장형과 부분보장형, 비보장형 등으로 구분
	신용등급	발행자가 국내일 경우 채권평가사에서 부여한 신용등급을 참고하고, 해외의 경우 해외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및 국가신용등급을 고려할 수 있음. 국가별 신용평가 업무 수준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참작 가능
	잔존만기	채권의 경우 수정듀레이션을 고려하며 클수록 위험도를 높게 측정
	파생상품의 편입비율	파생상품의 편입정도가 높을수록 위험도를 높게 측정
	위험조정 성과척도	정보비율 (IR), 벤치마크 민감도, 트레이킹 에러, 켈센의 알파, 샤프지수, 트레이너 지수 등

 위험도 측정 및 조정 시 참고할만한 **정성적 요소**

	구 분	설 명
정성적 요소	상품의 구조	상품의 구조가 단순하거나 복잡한 정도에 따라 조정
	거래상대방 위험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조정
	수익률 계산의 명료성	수익률 산정방법이 복잡할수록 위험도를 높게 조정
	이해의 난이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일수록 높은 위험도로 조정
	구조화된 상품에 대한 특정위험	만기이전 조기상환 가능성 여부 등 감안
	유동성 요소	펀드의 유동성이 낮을수록 위험도를 높게 조정
	펀드 형태	적립식 혹은 거치식인지 등을 감안

* 회사는 투자자정보 확인 결과에 따라 구분한 투자자성향과 회사의 내부정책에 따라 구분한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투자권유를 함.

<별지 제 4 호>

고객의 투자성향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류기준

구 분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고위험 (High Risk)	중위험 (Middle Risk)	저위험 (Low Risk)	초저위험 (Ultra Low Risk)
안 정 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안정추구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위험중립형	투자권유불가	투자권유불가			
적극투자형	투자권유불가				
공격투자형					

<별지 제 5 호>

적합성 보고서

■ 고객정보

고객명:	계좌번호:
------	-------

■ 투자정보 확인서 및 문항별 응답결과

1. 고객연령:	2. 투자예정기간:
3. 투자목적:	4. 원금보존추구여부:
5. 재산규모:	6. 수익과 위험에 대한 의견:
7. 금융상품 투자경험:	
8. 기타특이사항: 직원 직접 기재(선택)	

■ 고객의 투자성향 및 투자권유 상품

투자성향	투자성향 특징
○○형	예)고객님의 투자성향은 성장형입니다. 성장형은 투자에서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 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 상품	(예) ○○증권 제×××회 파생결합증권

■ 투자권유 사유 및 핵심 유의사항

투자권유사유	<p>예) 고객이 상품 선정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일부 손실 발생가능성이 있더라도 연 5% 이상의 수익 실현이 가능한 상품을 희망함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비추어 투자권유가 가능한 상품 중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 파생결합증권을 추천하였음</p> <p>※ 투자자 수요를 감안하여 해당상품을 선정한 핵심적 사유를 기술 (100자 이상)</p>
핵심유의사항	<p>예) 6개월 마다 조기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최대 3년간 자금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자금운용계획을 고려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p> <p>※ 고객의 구체적 상황(재무상황,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에 따라 각별히 유념 하여 할 사항(기초자산 및 상품의 손익구조 등)이나 불이익 (과표소득 증가 등)을 기재</p>

	(60자이상)
--	---------

■ 참고사항

1. 본 자료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및 투자관련 요구사항 등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상이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핵심 유의사항은 해당 상품의 특성 또는 고객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유의가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일반적인 위험내용 등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리딩투자증권 지점/부서명) _____(담당자) _____(인/서명)

<별지 제 6 호>

조건부자본증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예시)]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① 발행회사가 특정한 사유(예시: 부실금융기관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 받지 못합니다.
 - ②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회사가 특정한 사유(예시: 경영개선권고등)에 해당되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편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③ 본 금융상품의 만기는 장기(예시:30년이상)이며, 만기 도래한 경우 별도의 통지나 공고없이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고,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 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생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예시:5년등)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않습니다.
 - 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본 금융상품은 특약에 의거 파산절차, 청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모든 후순위채권자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 판단시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금융상품은 OO신용평가, OO신용평가등으로부터 OO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 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2.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권]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예시)]

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 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① 발행회사가 특정한 사유(예시: 부실금융기관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
 - ② 본 금융상품의 만기는 장기(예시: 5년이상)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 ③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예시:5년 등)이내에 중도상환되지 않습니다.
 - ④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⑤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보다 변제순위가 후순위입니다.
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판단시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 금융상품은 OO신용평가, OO신용평가 등으로부터 OO등급을부여 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 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규관리대장

1. 기본관리사항

사규명	투자권유준칙		
관리번호	8060	소관부서	Compliance팀
제정연월일	2009.01.30	시행연월일	2009.01.30

2. 개폐연혁

회차	연월일	개폐내용	비고
1차	2009.01.30	제정	
2차	2010.12.30	개정	
3차	2012.04.02	개정	
4차	2014.05.16	전면개정	
5차	2016.11.01	개정	
6차	2017.03.07	개정	
7차	2018.01.26	개정	

3. 유권해석

연월일	관련조항	유권해석 내용